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비 정비구역”이란 정비사업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·고시된 구역을 말한다.
2. “관리처분계획”이란 분양 설계, 관리처분계획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도,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 청명도 법 등 정비사업의 시행 내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5조(조합설립의 인가)

1. 주택 건축 사업 또 조합설립 발사 없을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
2. ...